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키즈카페 창업·운영

Q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혹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A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참조).

사고배상보험 가입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위에 따른 보험은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 키즈카페의 보험 등록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Q 키즈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직접 조리하는 음식과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관리나 허가 절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제품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등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접객업 신고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제25조제1항제8호 참조).

KOR 법 제 처 www.law.go.kr

※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신고 시 제출 서류

■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또한 식품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9호).

Q 키즈카페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요?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런 정보가 안내되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검사 합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함)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참조).

안전검사기관의 확인사항

■ 위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위반 시 제재

■ 키즈카페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및 제3호의2).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설치검사 합격 표시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부착,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5 참조).



〈출처: 안전인증 품질 표시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매뉴얼』 49쪽〉

Q 키즈카페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정기 점검이나 안전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키즈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시설검사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 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함)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 정기 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본문 참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참조).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2호).

■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Q 키즈카페에서 아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구 및 시설의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사고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법 제 처
www.law.go.kr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이 경우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①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
③ 조치내용
④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⑤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조).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부상
• 내장(內臟)의 손상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키즈카페 화재 및 시설의 화재 또는 결함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키워드 키즈카페 창업, 키즈카페 운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식음료 판매 신고, 시설기준 확인, 확인검사 및 안전검사, 환경안전관리, 의무보험 가입, 정기 확인검사, 관리주체의 안전교육, 안전사고 발생 대처방법, 키즈카페 폐업 신고